

# 평택고덕지구 사전청약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안내

- ▶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입주예약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이며, 금회 선정된 입주예약자는 추후 본청약 시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▶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위하여 건설호수, 주택공급면적, 추정분양가격, 세대평면(팸플릿 참조)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**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**
- ▶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**특별공급 신청일자에 사전청약 홈페이지([www.사전청약.kr](http://www.사전청약.kr))를 통해 인터넷 청약 신청접수하여야** 하고,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**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**  
※ 미신청 및 서류 미제출 시 당첨자 선정 불가
- ▶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격심사 결과 주택소유·재당첨제한 등의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,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- ▶ 지구여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([www.사전청약.kr](http://www.사전청약.kr))의 **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(2022.03.29 공고 예정)**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▶ 신청자가 동 안내문 및 공고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청약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,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'공급자격' 및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를 충분히 안내·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고,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(별도 기간연장 없음)

## I | 공급개요 및 일정

- 시행사 : 한국토지주택공사
- 공급위치 : 평택시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-26블록
- 분양가격 : 미정

※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추정분양가를 안내하며,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 확정됨

## □ 위치도



※ 본 위치도는 공급 대상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한 용도이며, 사업추진 과정 등에서 도면의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공급일정

| 구 분          | 일 자 (예정)          | 참고사항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| 2022.03.29(예정)    | 사전청약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www.사전청약.kr">www.사전청약.kr</a> )에서<br>공고 확인 및 인터넷 청약접수 |
|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자  | 2022.4월 초 ~ 4월 중순 |   |

\* 위 일정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추후 사전청약 홈페이지([www.사전청약.kr](http://www.사전청약.kr))에 게시되는 “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”을 통해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사전청약 공급호수 : A-26블록 공공분양주택 727호 (51㎡ 310호, 59㎡ 417호)

| 지구   | 블록   | 주택형 | 세대별 개략 면적(m <sup>2</sup> ) |        | 사전청약<br>공급호수 |
|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     |      |     | 주거전용면적                     | 주거공용면적 |              |
| 평택고덕 | A-26 | 계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727          |
|      |      | 51  | 51                         | 23     | 310          |
|      |      | 59  | 59                         | 26     | 417          |

- \* 사전청약 입주자모집은 주택신청형별 대표면적(51㎡, 59㎡ 등)을 대상으로 접수하며, 향후 평면 설계 등 사업승인과정에 따라 동일주택형별 내에서도 면적 및 평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\* 기관별 신청가능 주택형 및 배정물량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\*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 시 선택한 주택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합니다.

## II | 공급자격

기본요건

-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3.29 예정) 현재 수도권(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광역시)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 /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)으로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 공사에 추천한 자

## -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기준

아래 [무주택세대구성원] 전원(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)이 다음 [주택 및 분양권등]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

### [무주택세대구성원]

- 가.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(이하 '주택공급신청자'라 함)
- 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
- 다.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
- 라.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
- 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

### [주택 및 분양권등]

- 가.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
- 나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
- 다. 나목에 따른 지위(이하 "분양권등"이라 한다)를 승계취득(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

## - 입주자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) 구비여부

### • 입주자저축 불필요

국가유공자, 장애인, 철거민,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, 건축물 소유자

### • 입주자저축 필요 - 가입 6개월 경과, 월납입 6회 이상

북한이탈주민, 장기복무 제대군인, 10년 이상 복무군인, 우수기능인, 중소기업근로자, 공무원, 의사상자, 납북피해자, 다문화가족, 우수선수, 대한민국체육유공자

## □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
-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3.29 예정)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분
-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3.29 예정)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
- 과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(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,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, 토지임대부분양주택,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)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또는 동규칙 개정('10.2.23) 이전에 "3자녀 우선공급" 및 "노부모부양 우선공급"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
-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(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)에 있는 분 등

\*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,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공공분양주택단지의 사전 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
-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에 사전청약 홈페이지([www.사전청약.kr](http://www.사전청약.kr))에서 별도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. (미신청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불가)
-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다른 특별공급(다자녀가구, 신혼부부, 생애최초, 노부모부양)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중복·교차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.
-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동·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·층별·향별·타입별·층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. (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.호 변경불가)
-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은 본청약 시점에서 분양가격 및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등을 감안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.
-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본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4조에 따른 기간 동안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.
-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,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·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.
-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'22.03.29 예정 사전청약 입주자모집(공공분양, 신혼희망 타운)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.
- 본 안내문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대략적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,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, 공급일정, 유의사항 등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사전청약 공급문의

- ▶ 사전청약 홈페이지 : [www.사전청약.kr](http://www.사전청약.kr)
- ▶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: 1670-4007
- ▶ 경기 사전청약 상담(동탄 현장접수처) : (031) 8077 – 7979